

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9. 13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9. 4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. 9. 6.
- 다. 상정일자 :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7.9.13)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정호 교육지원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함 (안 제3조).
-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기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함 (안 제7조제4항).
-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하향 조정함 (안 제7조제2항).
- 교육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(안 제7조제3항).

다. 근거법령 :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
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안은 우리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”의 운영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,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구세와 구세외 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보조 사업의 증대 및 지원을 확대하고, 안 제7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, 위원의 임기연장 및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심의의 일관성,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(2007.7.20 법률 제8540호) 제11조제6항 및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」(2000.12.27 대통령령 17025호) 제2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,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교육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,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. 향후 교육지원 사업은 서울시 및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로 중복투자 배제,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 그리고 학력신장 및 진학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